

# 15. 宅地超過所有負擔金 賦課豫定通知 現況

資料提供：建設部

- 올해부터 처음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시·군·구는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월중 부과대상 택지를 정밀조사하였고 4월과 5월에 걸쳐 2차례의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6. 1 ~ 6. 20 기간중 부과대상자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음.
- 또한 부과대상 택지소유자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부과처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92. 6. 30까지 부과대상자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하였으며
  - 예정통지된 부과대상자는 16,888명(1,960개 법인 포함)이고, 부과대상 택지의 면적은 12,609천㎡(3,814천평), 추정부담금액은 1,642억원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9개도	계
대상자(명)	7,258	2,778	1,874	1,149	1,336	1,878	615	16,888
면적(천㎡)	5,301	2,043	1,351	1,219	818	1,489	388	12,609
(천평)	1,604	168	409	369	247	450	117	3,814
추정부담액(억원)	1,018	255	92	74	69	101	63	1,642

- 부과예정통지현황을 정밀조사시 파악된 내용(18,089명, 4,048천평)과 비교해 보면 부과대상자는 6.6%, 부과대상택지의 면적은 5.8%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이유는 정밀조사이후 부과대상택지를 처분, 이용 개발하였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임.
- 부과예정통지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시·군·구에 7. 10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군·구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 이의신청은 부과대상자의 12.2%에 해당하는 2,065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접수한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7. 20까지 통보완료하였음.

- 한편 시·군·구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택지를 제외한 부과대상 택지를 소유한 자에게 '92. 8. 31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며 건설부는 이의신청 처리내용을 각 시·도별로 집계하여 추후 발표할 계획임.
  - 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고지일부터 1개월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개인 및 법인별 주택부속토지 및 나대지 내역 별첨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예정통지현황

시·도별	건 수			면 적(천㎡)			부담금추정액 (천원)
	계	가구	법인	계	주택부속 토 지	나대지	
계	16,888	14,928	1,960	12,609.2 (3,814)	4,550.4 (1,376)	8,058.8 (2,438)	164,171,467
서울시	7,258	6,399	859	5,301 (1,604)	1,697 (513)	3,604 (1,091)	101,785,427
부산시	2,778	2,504	274	2,043 (618)	871 (263)	1,172 (355)	22,505,566
대구시	1,874	1,719	155	1,351 (409)	552 (167)	799 (242)	9,235,109
인천시	1,149	1,026	123	1,219 (369)	425 (129)	794 (240)	7,407,429
광주시	1,336	1,142	194	818 (247)	368 (111)	450 (136)	6,899,707
대전시	1,878	1,645	233	1,489 (450)	502 (152)	987 (298)	10,050,561
경기도	255	208	47	164 (49.6)	56 (16.9)	108 (32.7)	3,139,946
강원도	20	11	9	12.1 (3.6)	4.5 (1.4)	7.6 (2.2)	326,747
충북도	36	30	6	36.3 (10.9)	9.0 (2.7)	27.3 (8.2)	420,300
충남도	61	53	8	43.2 (13.0)	21.7 (6.6)	21.5 (6.4)	345,144
전북도	15	12	3	11.7 (3.5)	1.5 (0.5)	10.2 (3.0)	135,265
전남도	41	29	12	23.6 (7.1)	9.3 (2.8)	14.3 (4.3)	250,960
경북도	95	81	14	55.0 (16.6)	14.5 (4.4)	40.5 (12.2)	912,270
경남도	86	61	25	40.5 (12.2)	18.6 (5.6)	21.9 (6.6)	732,061
제주도	6	6	0	1.8 (0.5)	0.3 (0.1)	1.5 (0.4)	24,975

※ ( ) : 천평